

제40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14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13)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7)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6)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8)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7)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9)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2)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6)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5)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9)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1)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7)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9)
2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2)
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2)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3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3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3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1)
3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6)

상정된 안건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3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3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4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13) 7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7) 7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6) 7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8) 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7) 7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9) 7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2) 7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6) 7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6) 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7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7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7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5) 7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9) 7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7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7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1) 7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 25

(14시12분 개의)

○소위원장 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첫 법안심사소위입니다. 올해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14시14분)

○소위원장 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항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가 2021년 12월에 제출한 것으로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 규정의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당시 총 26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5개 법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그 중 2개 법률의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다음, 4쪽 조문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행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만 규정하는 경우 실행 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행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조항만으로도 해석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론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보아도 체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 진술조력인 등 지도, 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6쪽에 두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일괄 추진한 정부 법안으로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14시17분)

○소위원장 정경희 의사일정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조문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서비스 대상 그리고 거주 형태, 자립 여부 등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각 유형별로 지원 혜택과 최대 입소 가능 기간이 달라 그 추진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기능과 명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 명칭에 따른 낙인 효과로 입소를 꺼리는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모인 경우가 최근 3년 평균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모와 아동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출산, 양육, 생활 그리고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비슷한 대상별로 시설 유형을 재편함으로써 시설의 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화하고, 기능과 명칭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산지원시설의 정의와 부칙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부터는 조문대비표인데 19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보시면 저희가 출산지원시설을 정리 하였습니다. ‘출산지원시설: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하는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일단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다만 문구 수정하고 정리한 지금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전주혜 위원님께서……

○전주혜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한부모 중에 남자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니까……

○소위원장 정경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의 수요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가족이.

김한규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김한규 위원 저도 공감하고, 명칭 바꾼 것은 잘 보여 주는 것 같은데 명칭이 바뀐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나 기관의 기능에 관해서 특별히 바뀐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별로 했던 것을 지금 기능별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한규 위원 다른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14시22분)

○소위원장 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조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25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아이돌봄시스템이 2012년 3월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주체 모두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는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이돌보미 자격 및 활동 정보,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수집·이용·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자동매칭부터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비용 지원 업무 처리 전산화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보유와 전반적 업무 처리 시 시스템 활용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의 제공·연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상 정보가 아이돌보미의 범죄 경력, 자격취소 이력 등 개인정보임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정보 제공·연계의 목적 그리고 대상을 개별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고,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또 수정 보완 및 조문 간 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봄법은 통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벌칙을 더욱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취득 및 배포가 더욱 용이하고 빠르며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상 비밀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법률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33쪽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부터는 조문대비표이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대로 여기서 일부 조항 개정 수정 수용한 것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일부는 또 개정안의 내용대로, 다만 25조 제4항과 5항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은희 의원께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께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조은희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조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 정경희 몇 가지가 있었지요. 25조 2항 본문하고 5항하고…… 수정의견이 지금 두세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 하나하나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조은희 위원 예, 봤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없던 게 오히려 수정의견에 들어간 게 있는데요. 법 25조

2항 1호에 10조의2……

차관님, 10조의2(건강진단) 이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사실은 저희가 센터에서 돌보미를 고용하게 되면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공식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에 명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주혜 위원 요새는 개인정보에 민감하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정보가 공유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혹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그냥 받는 것은 아니고 2항에 이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금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서 3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것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가 된 게 아니라 4항 연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연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가부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민간단체 및 기관 간의 정보 연계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사이트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조금……

○전주혜 위원 남용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취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신중한 의견을……

○전주혜 위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

니까?

○김한규 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받더라도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주체별로 수집되는 정보들 중에 걱정되는 것은 이용자 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14세 미만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정보가 과연 다 필요한 것인지 좀 의문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환불 계좌 정보나 비용 결제 정보 이런 것들. 기관별로 아이들의 돌봄 과정에서 응급상황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수집되는 정보를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하나가 정말 다 필요한 것인지 확신이 안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상들을 어떻게 정했는지,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조금 상세한 설명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송영광 가족문화과장 송영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현행법에서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각각의 조항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기는 한데 환불 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 이용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만약에 취소해서 돌려줘야 되면 계좌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저희가 요청을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필요 없는 정보를 저희가 받는다고보다 아동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 연령,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 말씀은 서비스 이용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통합 정보로 다 모아서 다른 기관에 제공할 필요까지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송영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이용하게 되어 있고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7항에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해서 운영할 때 이용자 가정의 소득 판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만 연계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쪽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부분은 5항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다른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항목의 법적 근거를 만들듯이 그 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저희 쪽에 신중 검토로 삭제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 지금 저희도 수용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조금 더 열어 봤는데 수석전문위원과 여가부에서 위원님 같은 걱정을 좀 하셔서 그 개정안은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정의견에 제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김한규 위원**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접 이용하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서 여쭙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꼭 필수적인 정보라서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기관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장 송영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필수 동의를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연령이라든지 이용자 가정의 소득을 판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이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동의하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더 이상 논의하실 분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13)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7)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6)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8)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7)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9)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2)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6)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5)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9)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1)

(14시37분)

○소위원장 정경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청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을 한꺼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조문별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부터입니다. 18건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라든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신고 의무기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심사 경과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조은희 의원님 안은 작년 9월에 제출하셔서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된 안건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8쪽,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판결 전 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홍정민 의원안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이수 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피해자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결 전 조사 대상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추가하여 가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형법 51조(양형의 조건) 규정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2009년, 검찰은 2016년부터 각각 별도의 양형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과 검찰의 양형조사에 이미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피

해 아동·청소년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판결 전 조사는 범죄인의 심리·정신적 진단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태양 및 정도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로 보호관찰·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 부과 필요성 판단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 양형조사와는 다른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형법 51조(양형의 조건)에 피해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고, 이 과정에서 현재 형법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모두 포섭되고 있으므로 추가할 실익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조사관이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있는 현행 양형조사제도와 중복될 수 있고 판결 전 조사제도는 피고인의 사회내 처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양형요소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 전 조사에서 양형요소인 피해자요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주었습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피해자 조사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탁틴내일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이 가볍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서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그리고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60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여가부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보호관찰소가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에 관한 사항은 형법 제51조 개정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입법 취지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판결 전 조사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신중 검토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사관들이 양형조사를 할 때 사실 필요한 것은 다 조사를 하거든요. 또 필요하면 피해자와 연락해서 피해자도 만나고 아니면 요새는 피해자 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대리인과 연락을 해서 피해자의 상태랄지 처벌불원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결 전 조사에 꼭 이렇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피해 결과나 정도 또 피해 회복 여부랄지 처벌불원의사 이것은 충분히 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도, 법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저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무엇보다 관계 기관들 의견에서 아무래도 보호관찰소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문성을 떨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역시도 신중 검토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관계 기관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이 안건들은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검사·사법

경찰관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과 홍정민 의원안인데요. 안민석 의원안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정민 의원안은 조금 달리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 영상물 및 게시판의 삭제·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즉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3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안은 모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재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법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 처분 명령을 요청하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영상물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홍정민 의원안의 경우 현재도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응급조치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협의 급박성과 가해자의 특정성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성격상 특징이 쉽지 않은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응급조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관계 기관의 의견입니다.

경찰청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안민석 의원안에 대해서 삭제에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모호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직접 삭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주었는데요. 안민석 의원안에 대해서 검사·사법경찰관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도 신중 검토인데요.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를 즉시 하도록 한다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신분비공개 그리고 위장수사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 제한 명령권 등 현행 법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응급조치 대상 범죄의 범위 및 차단 조치 주체 등에 대해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여러 기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하에서도 수사기관은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것이 작동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경찰청에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2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역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사법경찰관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업무를 여러 기관들이 복수로 역할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 방통위의 업무가 형해화할 정도가 되지는 않더라는 생각이 드

는데요.

여가부에서 보시기에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2호를 제외했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25조의10, 제안한 홍정민 의원안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상당히 대상을 특정하기가…… 위반 의심을 한 것을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대상 자체가 약간 모호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대상 부분에 대해서요.

○김한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단 의심되는 영상물이 삭제된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범죄 대상 영상물 인지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삭제하고 필요하면 다시 복원하도록 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엄격한 요건이나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성범죄 영상물이 어디에 올라가 있으면 바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으면 일단 삭제하는 신속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더라도 이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예상되는 불이익하고 비교형량 했을 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62 페이지에 보면 법무부 쪽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권력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충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법무부에서 혹시 와 주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법무부는 여기 오지는 않았고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

려가 있는 사안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반적인 포르노라든지 그런 것으로 의심해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한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아주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거라서 범위가 한정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하면 위반 의심 사실을 제외하고 위반 사실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불확실한 표현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심으로 인해서 너무 광범위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 부처 간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위에서도 미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지금 이 법안에 관련해서 관계 기관의 의견이 주로 신중 검토 내지는 보완 필요로 나와 있고 또 여가부의 의견도 신중 검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이……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계속 심사하더라도 관련해서 의견은 좀 남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정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저는 김한규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 성착취물의 조기 차단이 피해를 축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방심위에 요청하고 삭제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물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방심위와 같은 권한을 추가적으로 경찰이 갖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무부의 의견이 이렇고 방통위의 의견이 이렇고가 아니라 여가부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주무 부처로서 성착취물의 피해를 가장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방통위에도 의견을 좀…… 그냥 이 의견을 수용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계속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지금 이 규정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의 가능한 수준 혹은 여가부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셔서 다음번 논의에서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소위원장 정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한규 위원** 아까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데요. 아마 다른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가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법안은 모르는 내용이라……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왜 그게 꼭 의결이 돼야 우리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계류가 되어 있어서 같이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저희도 아직, 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유사한 내용이 다른 상임위에 있다고 우리가 논의 못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경희** 홍정민 의원안, 61쪽 아래에 나와 있는……

○**전주혜 위원** 저도 의견을 첨언하면…… 차관님, 일단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영상물 삭제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공감대도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발견하면 여가부 내의 기관에서 바로 즉시 삭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경찰청에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서 발견해서 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돼 있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거기서 삭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삭제 지원을 하고, 또한 저희가 방심위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불법 조치, 차단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방심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디지털 성폭력물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는데 저도 방문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굉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다. 여성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인력 확보가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정규직 인력이 사실 40명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규직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하는 게 상당히 주요 과제입니다.

○**전주혜 위원** 이게 법이 없어서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 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상 삭제입니다. 이것은 2020년에 n번방 사건이나 그런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돼서 그때 관련 법안이 일부 통과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시행 중이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삭제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인력 지원이나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법안이 없어서 그동안에 영상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홍정민 의원님 안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법률이라는 것이 명확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이 안건들은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전에 말씀하셨던 홍정민 의원님이 같이 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22조의5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바로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의무 신고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기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곳으로 종사자가 영유아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직접 접촉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서 신고 의무 기관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기관의 경우에도 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센터 직원 등 종사자가 영유아와 직접 접촉함에 따라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정부도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입법 추진 및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6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보고 의무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한 성교육 내용 및 결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교육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여가부가 제작한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매뉴얼을 통해서 성교육 전문기관의 교육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성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은 개별 학교의 의뢰로 이루어지는데 성교육 전문기관은 학교와 협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므로 별도로 보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실적 외의 교육 내용을 별도로 사후 보고 받는 것의 집행 현실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서울, 경기 등 8개 지자체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 이미 보고하고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의 경우 의뢰 기관과 교육 내용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검열 및 과태료 등 규제의 과잉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차관님, 지금 이게 보고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성교육을 하고 있는 센터나 기관들은 반기별로 운영 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각 기관별로 교육일지라는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불이익도 있습니까? 제재나 불이익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로는 없지만 사실 교육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학교랑 사전에 다 같이 합의하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육을 하도록 센터 운영지침에 돼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어겼을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 조치는 없지만 저희가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 아직 실태를 정확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실제로 제재나 뭔가 불이익을 준 그러한 현황 파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단체가 위탁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은 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의 내용을 법문에 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추가적인 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현황,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교육단체로서의 지정이 취소됐달지 그러한 현황을 본 위원과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운영 현황을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다른 법령상에 따라서 진행되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디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의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다음 논의가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결국 성교육 내용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이라는 것은 결국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그것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전문기관이 하는 수행 내용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보고받는다면 전문기관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도 생길 우려가 있고, 정말 많은 데서 이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또 다른 위원님……

○**전주혜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소위원장 정경희** 실익이 없다, 규제의 과잉화가 초래된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때 지자체하고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단체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부모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부모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면 다음 번에 심의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자동차 소유자인 경우 성범죄자의 공개정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범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

소, 신체정보 등과 성격이 달라 성범죄자에 대한 일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등록번호가 자주 변경될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특정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 취지는 각 집에서 받아 보신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자동차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더 주위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다만 또 여러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71쪽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대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최장 보존·관리 기간인 30년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함에도 신상정보를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형의 실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전과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신중 검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주제는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73페이지입니다.

고지 대상 기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기관, 지역아동센터 외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기관의 종사자는 영유아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정 기간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주형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고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시설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고지 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주된 이용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동일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 취지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직접 보호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비례의 원칙 및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범위가 아닌 19~24세의 청소년이 거주하는 자립지원시설이나 아동·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지원·전담하는 기구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고지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교습소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학원과 유사하고 학원이 이미 고지 대상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교습소를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조항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혜영 의원안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별도의 호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항과 같이 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므로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정 수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중 고지 실익이 낮은 기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교육부는 개인과외교습자도 고지 대상에 함께 추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수정 수용의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중 고지 실익이 낮은 기관들, 아까 예시한 아동상담소나 아동전용시설 등 일부 시설은 제외가 필요하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의견을 고려해서 개인과외교습소에도 추가 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예, 말씀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저도 비례의 원칙 때문에 취지에 맞게 조금 줄이는 건 좋은데 기관 성격상 아동·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일단 방문을 하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아동전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동상담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제가 이 기관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동전용시설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야영장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 보호시설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김한규 위원 상담……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니, 여기에 포함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은 포함……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기고지 대상이고 아동전용시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여기는 제외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동전용시설은 놀이시설이라면 저도 공감은 하겠는데 아동상담소는 어떻습니까? 아동들이 오는데 상담소 근무하는, 상담소에 만약에 성범죄자가 온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제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여기도 사실은 머무르고…… 저희가 입소해서 거주까지 보호하고, 거주 기간이 좀 있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했고요. 아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많이 하면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위험이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저도 수정안 대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 교육부가 교습소에 준하는 개인과외교습자도 고지 대상에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개인과외교습자라는 게 개인이 과외를 하는데 등록을 해서 준기관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소위원장 정경희 이미 등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말만 개인과외교습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수정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한 주제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78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허용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 김예지 의원안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주혜 의원안은 개인 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면 공개기간을 초과하여도 정보통신망에 공개정보가 남아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은 개인 간 정보 공유가 지속되면 사실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정보 공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시간이 경과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할 목적이 아닌 개인 간 정보 공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신상정보 고지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는 신상정보 공개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의 장래 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개정보와 동일하게 정보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9쪽,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권인숙 의원안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김예지 의원님 안과 전주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온라인상 유포 확산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여지가 있

다고 생각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요. 권인숙 의원님 안은 지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수용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영 위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이견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동의합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맞습니다. 위에 것은 신중 검토이고 아래 권인숙 의원안은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수용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권인숙 의원안의 원래 있었던 부분에서 검토보고요지가 일부 바뀐 거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안은 신중 검토, 권인숙 의원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위의 부분은 신중 검토, 아래에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실래요? 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조 위원님 먼저……

○전주혜 위원 저는 검토의견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지요.

고지 대상은,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공개정보만 규율하다 보니까 고지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런 얘기가 사실……

○전주혜 위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개정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고지정보인데 둘 다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런데 고지라는 것이 우리

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것을 우리가 고지라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한다면 과연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 정보를 고지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공개하고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지금 현행 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를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악용금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정보는 주소 같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각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외 개인적으로 유통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구체적으로 공개정보는 그렇다고 치고 고지정보를 악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카톡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예, 말씀하세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알고 있냐? 네가 직접 못 들어가 봤을 것 같으니까 주변에 알려서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금지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개나 고지로 달성하려던 목적들을 보완해 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혜 의원님 안에 나온 것처럼 개인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개나 고지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왜 이것을 악용이라고,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지받잖아요. 그런데 그 고지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웃에, 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는가, 그 사람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알려 준다는가 하는 게 악용한 것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권익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저는 정보 공개하고 고지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공개하고 고지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다 이거지요.

고지라는 것은 정부기관, 행정기관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통지를 하는 것이 고지인데.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러니까 고지를 다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 명령으로 내게 되어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개인한테 유통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항을 둔 거거든요.

알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알릴 경우에는 또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닐 때는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계속 남아 있게 되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매년 한 번씩 현행화를 시키는데 그러지 않은 정보가 계속 떠다닐 우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한쪽에 실익이 있으면 한쪽에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예를 든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널리 알려 줌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크지 피해가 더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다 처벌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법률상의, 법제상의 과잉 입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지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조은희 위원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소위원장 정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이 부분은 범죄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하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요. 우리가 좀 더 숙고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 다시 의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의원영 위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저희가 신중 검토를 애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10년 지나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잡은 거지요. 30년까지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중 검토로 간 이유가.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실제로 공개되는 그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일대일, 맨투맨으로 갈 경우에는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도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하고.

다만 권인숙 의원님 하신 것처럼 공개정보뿐만 아니라 고지정보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 정도는 저는 동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고지에 관한 것은 계속 심사로 넘기고……

○전주혜 위원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사실 피해자를 많이 변호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못 하게 해 버리면 사실은 공개의 실익을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 더 계속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것까지 반영해서 저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내용 중에서 권인숙 의원님의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것은…… 그런데 신중 검토가 여가부

에서……

○양의원영 위원 지금 법이 김예지 의원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전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아예 열어 놓은 거고요. 악용금지에 방송만 들어가 있고 정보통신망 공개는 아예 빠진 거거든요, 악용금지 대상으로. 그래서 김예지 의원님은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를 다 넣자 이렇게 하신 거고. 전주혜 의원님은 정보통신망 중에서 일대일로 하는 것 정도는 열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권인숙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방송, 정보통신망 이용한 공개 전체를 다 금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고지정보만 얘기한 거고.

○소위원장 정경희 그런데 전주혜 의원안에 대해서도 지금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온 거지요. 왜냐하면 일대일로 하더라도 결국은 다수에게 전한 것과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양의원영 위원 같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경희 예, 그래서 신중 검토가 됐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권인숙 의원안 중에 신상정보, 공개정보뿐만 아니라 현행 제55조가 ‘공개정보의 악용금지’인데 권인숙 의원안에는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악용금지’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김한규 위원님이나 제가 볼 때도 고지정보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정보 보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과잉 입법이 아닌가 싶은……

○김한규 위원 제 의견이 좀 불분명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권인숙 의원님 안하고 전주혜 의원님 안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하고 고지를 포함해서 다 일단 악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하되 전주혜 의원님께서 단서에 넣으신 것처럼 좀 일정하게 개인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것들은 금지되는 행위에서 빼는 이런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안까지 고민을 하고 다음에 논의를 하면 어떻까라는 생각입니다.

○조은희 위원 김한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전주혜 위원 추가 검토하시지요.

○소위원장 정경희 지금 논의하는 8항 자체를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81쪽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안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인재근 의원안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기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여기 정리된 것처럼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이종성 의원안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 어린이 집을 추가합니다. 홍석준 의원안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들 시설은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의료인에 한정한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단순 행정, 시설 관리 업무 종사자까지도 취업이 제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정 수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홍석준 의원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대한의사협회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제한은 과도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안과 인재근 의원안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 간주 조항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간주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특례 대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취업 중인 자'에서 '취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취업 중인 자'뿐만 아니라 취업하려는 자 등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 등 전체에 해당하므로 '취업자 등'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먼저 김민기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수용의견입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인 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제안이 안 되어 있지만 건강가정센터가 들어간다면 같은 기능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기 의원님 및 인재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인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취업 중인 자'에서 '취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의견도 수용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정주 위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말씀하세요.

○유정주 위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에 대해서 비의료인의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유정주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나 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은 해 보셨는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인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을 의료인 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지금 유사한 법은 저희가 그것……

○유정주 위원 취업제한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맞습니다. 취업제한 부분의 대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하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한규 위원 원래……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리고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김한규 위원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면허가 박탈된 의료인들이 의사가 아닌 직원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할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의 의료인으로 계속 활동할 우려도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의사협회의 신중 검토처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예외적인 사유겠지만 그런 분들이 의료기관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료기관을 제외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지금 의료기관이라 하면 사무직 직원들, 행정직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부 등 상당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져서……

지금 저희가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개정안 전에 보면 한 53만여 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저는 공감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과잉 입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애기지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비의료인이 의료인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애기입니다, 큰 기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주혜 위원 저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수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야청법을 다 심의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상 한 10분 정도만, 4시까지 휴식을 하고 4시에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지요.

일단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힘드셔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할 다음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성범죄 경력 주기적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확인 주기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 전에는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취업 시점과 점검 시점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경력을 스크리닝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현행 제도로는 취업자 등이 취업한 이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경력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매년 1회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취업자 등이 취업 이후 성범죄를 범하였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종료되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의 성범죄 경력 확인·조회에 대한 교육감·교육장의 확인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와 달리 최근 교육청에서 전문 강사를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교육장이 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교육감·교육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유치원 그리고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4쪽부터 수정의견으로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먼저 한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취업 전 성범죄 조회를 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불분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대상이 한 53만여 기관이 되고 또 실제 대상 인원을 보면 338만여 명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적 부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 경력 확인·조회에 대한

교육감·교육장의 확인 특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수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개별 학교 등이 범죄경력 조회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한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나왔고, 권인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수정하는 대안 제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전주혜 위원 하나만 여쭙볼게요.

차관님, 그러니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취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전문 강사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각 해당 기관으로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전문 강사는 한 교육기관에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가 있어서 다니는 기관마다 경력 조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시간이나 상당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주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별 이의 없으시므로 한준호 의원안은 신중 검토 안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권인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97쪽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규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 기관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점검·확인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오늘 심사를 통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정리된 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제한 점검·확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의 경우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98쪽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다수 다양하게 추가됐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점검·확인하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확인이 필요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개정안의 경우 일부 잘못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에 정리된 대로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99쪽부터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전부 다 확인·점검 주체를 수정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의한 대로 이 주제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104쪽입니다.

법적 표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징역형의 표현이나 공소시효 특례 대상, 양벌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무기징역 또는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표현을 ‘무기징역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으로 표현을 다듬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표현 체계는 현행 형법과 대체로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

니다. 다만 현행 형법과 완전히 동일하게 정비하려면 ‘무기징역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을 ‘무기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으로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특례 대상에 대해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19세 이상의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양벌규정에 대해서 보면 11조 3항·5항은 당초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벌금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벌규정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06쪽부터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였는데요. 사실 개정안 외에도 좀 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무기징역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을 ‘무기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하면서 여기에 없는 조문도 조금 더 추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 징역형 관련한 개정안 내용은 현재 형법, 성폭력처벌법상의 체계성,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11조 3항과 5항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같이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과 우리 위원회 의견이 둘 다 자구 수정 및 조항 정비에 관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전주혜 위원 제가 하나만……

지금 자구 수정이 징역형과 유기징역 이것을 통일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징역을 다 징역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차관님, 이것은 형법상으로도 무기 또는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다 확인하시고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심의한 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110쪽입니다.

신상정보 고지 방식과 관련된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고지 대상 가구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주민센터’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를 ‘우편으로 송부한다’로 변경하고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님 안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센터가 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주민등록법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체계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정보 오류를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상 고지정보 오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체계상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규정

뒤에 이에 대한 정정 요청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51조의2를 52조의2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음,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고지 대상 기관에게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의 방법으로도 고지하려는 것입니다.

고지정보를 우편 송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의 방법으로도 고지할 경우 보다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고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속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도 우편 외의 방법을 통해서 고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정 수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관께서……

그리고 113쪽부터는 수정의견으로 자구 정리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권인숙 의원님과 조은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구주를 세대주로 바꾸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일부 조문 정리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이 얘기한 성범죄자 고지 정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지 송부 방식을 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고지 송부 방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여가위하고 정부 측 둘 다 수정의견으로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 저는 수정의견 수용하는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쭙보고 싶은 게 현재 이 모바일 고지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저희가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로 동시 발송을 하고요. 만약 고지 대상자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열람하지 않으시면 우편 송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다시 한번 더 보내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여가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124쪽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8건의 개정안이 시행일, 적용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이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9건의 개정안의 내용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 또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데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취업제한기관이나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개정안의 대상이 누구인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정 수용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소급 적용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형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고지 명령을 받은 자 그리고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구장 표시로 있는 것은 그럴 경우에 적용될 만한 적용례를 정리한 것이고요.

참고로 126쪽에 최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한 경우의 적용례를 둔 것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입법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시행일에 대해서는 수

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자는 저희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지 대상자 또 현재 취업제한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여가위 측 전부 다 수정의견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18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자료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의사일정에서 22항까지 상정을 했는데 21항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은희 위원 22항까지 하고 마치자고요?

○소위원장 정경희 예.

○용혜인 위원 1권만 하고 끝내자는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정경희 예.

○유정주 위원 2권은 안 하고요?

○소위원장 정경희 오늘 상정한 것으로, 더 하시게요?

○유정주 위원 아니, 다들 물어보셔 가지고요.

○용혜인 위원 1권으로 끝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정경희 그렇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16시21분)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제2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통보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표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장은 현재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에 통보합니다. 개정안은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으로 되고요. 현재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데, 개정안은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시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가 가능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점검 실시 등의 내용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미통보 또는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결과의 경우는 현재의 재발방지대책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일률적으로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2021년 7월 개정법률 시행 이후 사건 인지부터 재발방지대책까지 통상 85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가족부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공개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사건 처리 결과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처분 시 사안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1개월 이내의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규정은 감사 등 타 규정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실질적·현실적 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여가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시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는 기관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은폐·축소할 우려가 있어 사건 처리 등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되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건 발생 사실 통보와 그 처리

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고려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사건 통보 또는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법례에서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기관의 통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기관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을 판단할 수 없는 등 6만여 개에 달하는 국가기관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과태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과태료 부과 신설에 동의하고,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개월 이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의 현실적 소요 기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34쪽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수정수용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조문을 수정한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134페이지,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조의4 1항 부분 관련해서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사건 처리를 강화하려는 전주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한 8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1

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만 1개월로 축소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는 실제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발방지대책만을 제출하도록 해도 충분히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항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애기한 것처럼 2차 피해 방지라든가 피해자 의사 고려 등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현행법 규정대로 유지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도 1·2항 수정에 따라서 현행법 규정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조(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정안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입법정책적인 것으로 봐서 저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다만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조문에 따라서 신중 검토 또는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기관장 사건 관련되어서 결과보고서 말고 재발방지대책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137쪽 재발방지대책 서식을 보시면 사건 개요가 있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그다음에 사건 처리 경과라고 해 가지고 사건 처리 결과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사건 처리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소위원장 정경희 오른쪽에……

○김한규 위원 지금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재발방지대책 안에, 대통령령에 따르면 사건 처리 결과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양식도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재발방지대책을 받을 때 이 양식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이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 여가부 수정의견대로 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거고.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니, 지금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는 들어갑니다, 저희가 5조의4 수정의견 낸 것에도.

134페이지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피해자에 대한 의사 표시는 현행 안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게 ‘다만’ 뒤에까지도 포괄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제가 조금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정경희 대표발의하신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차관님, 그러면 재발방지대책 안에 사건 처리 결과 내용이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전주혜 위원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반기에도 여가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뭐가 문제였냐 하면 그 피해여성이 사실 몇 달 전에도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해서, 그 사건은 형사재판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1차적으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하지 않고, 그사이에 결국은 또 추가적인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받는 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는, 결국은 여가부에 이런 재발방지대책을 내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차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낸 기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저희가 사건 통보된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받고 있습

니다.

○전주혜 위원 예, 받고는 있는데 그게 제대로 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서울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추가적인, 이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또 다른 공무원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입법안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처벌까지는 아닙니다만 과태료 정도의 행정적인 처분을 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여가부의 수정의견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견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대표발의하셨으니까.

그러면 5조는 신중 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정경희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5조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아니고 전주혜 위원은 여가부의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전주혜 위원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차관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재발방지대책은 3개월 이내에 한다 하더라도 사건 처리 결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묶어서 3개월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건 처리 결과는 더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대책은 제도적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사건 통보를 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저희한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134페이지 현행법 5조의4 1항에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사실을 통보하잖아요. 사실을 통보하는 거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지금 전주혜 의

원님 개정안에 보면 사건 처리 결과……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거랑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시작과 끝이니까. 그러고 나서 제도적 개선 대책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로 같이 묶은 이유가 있느냐고요.

○소위원장 정경희 아니, 그런데 137쪽에 나와 있는 문건을 보면 지금 정부 측에서는 사건 재발방지대책이라고 그래서 사건을 보고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한 문건에 낸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조은희 위원 그것을 3개월로 그렇게 늘려서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일단 여가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구성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피해자 보호 조치나 매뉴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외의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이내로, 일단 저희가 징계라든가 고충위원회라든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재발방지대책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재발방지대책에 사건 처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즉시 통보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또 통보에서 제외되는……

○조은희 위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닌데…… 제 질문은요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연기하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연기함으로, 같은 서식에 넣음으로써 사건 처리 결과도 1개월 내로 할 수 있는 것을 3개월로 늘리는, 이를테면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지체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패키지로 묶을 필요가 꼭 있었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위원님,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건 처리하는 데, 저희가 받아보니까 공공기관이 8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래서 사건 처리 결과를 한 달 이내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가 모든 사건을 한 달로 단축할 수는 없고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만 한 달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에 모든 걸 담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양의원영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요, 저는 전반기에 있지 않고 후반기에만 들어오기는 했는데, 신당역 사건도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때 철도공사 사장님 오셨을 때 보고를 했냐, 보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안 한 이유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였나 하여튼……

뭔가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그리고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실제 현행법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때 반대의견이었는지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은희 위원 ‘같은 직장 동료라서 원하지 않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배 썰라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이것을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라고 한 것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 36곳, 41건의 보고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직장 통보를 했고, 한 23일 이상이 걸렸어요. 통보하는 것만 해도 23일 이상이 걸렸고 100일 이상 걸려서 직장 통보한 경우도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주혜 의원님이 이 법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저는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기관장에 한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차라리 재발방지대책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3개월로 한다면 처리 결과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어떤 분리 조치를 했다, 그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의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통보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관 개인에게 부과하는 건데 그것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대

책을 3개월로 하고 처리 결과는 1개월 이내로 해야지요. 피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분리 조치든 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길어요, 처리한다고 하는 그 조치를. 그러면 한 달 동안 가해자랑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건지…… 없잖아요.

그래서 처리 결과는 한 달 이내로 하는 게 맞고요. 재발방지대책은 좀 더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 3개월로 분리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정경희 법안이라는 것은 축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지금 130쪽 위원회에서 나온 검토보고 자료에 1, 2, 3, 4 이렇게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뉘서 얘기를 하나씩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래서 1번에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건데 지금 개정안에는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견해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이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선 정합시다.

○양의원영 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면요,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는 2차 피해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그동안에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서 하나같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질 끌면서 2차 피해가 그 내부에서 발생한 거였지 이것을 여가부에 보고했다는 것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보니까 2013년에 폐지가 됐네요. 이 건은 본인이고소할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소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그 취지와도 맞게 성범죄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고하는 것은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그 취지와 연결해서도 이 조치는 맞을 것 같고요, 1번만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정경희 예, 1번만 가지고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양의원영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1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여가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사건 처리 결과라는 것을 지금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따로 사건 처리 결과 서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경희** 용 위원님, 그것은 3항에서 얘기할 거고요. 우선 1항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1항에 관련해서……

○**소위원장 정경희** 피해자 동의 없이, 말하자면 2차 피해……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성폭력 사건에 관한 경우에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밝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십시오. 지금 양의원영 위원님께서 피해자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용혜인 위원** 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또 1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1항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의견이 꼭 없으면 이것을 삭제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피해자 반대의견이…… 반대를 하면 사실 통보를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시고요.

○**전주혜 위원** 그리고 3개월 이내도, 물론 더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의 시점이 3

개월 이내인 것이지 꼭 3개월에 맞춰서, 빨리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쯤에 내라 사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차관님, 지침은 추가적인 여성가족부령이랄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랑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발방지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개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장 사건만 단축해서 1개월로 하자고 했던 것이고.

현행 안의 5조의4를 보시면 1항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할 때 사건통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더 반영을 해서 사건통보서에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지금 주신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따로 기간을 분리해서 여기 법안에 넣는 것보다 현행 안대로 하면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통보서 안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것도 안인데. 조금 아까 양의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사건 처리 결과하고 재발방지대책하고 분리해서 하자는 게 어느 위원님 의견이셨지?

○**양의원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정경희** 그렇지요.

사건 처리 결과는 1개월 내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은 3개월 내에 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여가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혜인 위원** 아니, 사건 처리 결과를 따로 신설할 건지부터가 사실은 쟁점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현재 또 저희가 의견 조회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느니, 사실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여성가족부 통보사항 안에 사건통보서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에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는 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포함

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따로 안 넣으셔도 이것으로 같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위원장 정경희 법안 발의하신 전주혜 위원님께서……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조 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5조를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전주혜 위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5조 1항에 따른’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재발방지대책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아니, 위원님이 내신 법안에 1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전주혜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재발방지대책에 사건 처리 결과가 포함은 돼 있지만 그래도 명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것 자체가 뒤에 과태료와도 관계가 있고 이래서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제 원안에서 1개월을 3개월로 늘려서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지금 전주혜 위원님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재발방지, 통보서에……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법안 발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주혜 위원 과태료라니까, 과태료.

○양의원영 위원 과태료 하나만. 나머지는 다……

○전주혜 위원 과태료, 강제조항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따로 명확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발방지대책 안에 사건 처

리 경과를 넣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내에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3개월 내에.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조은희 위원 그것은 현행법이잖아요.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개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런데 기관장에 의한 사건은 달리 처리하는 거니까.

○양의원영 위원 ‘다만’ 하고 ‘기관장’만 넣고?

기관장이 또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지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40건이 넘어요. 그중에 기관장 해 봤자 두 명이거나 그런데 나머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호조치를, 기관장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조은희 위원 발언권 신청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차관님, 아까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사건 발생을 통보할 때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추가에 대한 게 상세하면 좀 걱정을 덜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 대책이라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보호하는 데는 가해자의 처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하겠더라든지 기관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여야 되지 그냥 놔두면 아까 양의원영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도시공사 사장 처럼 된다고요. 같은 동료 직원이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서 덮어 놔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리하게 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이 몰랐잖아요. 내부에 스토킹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동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덮어서 살인 사건까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이 법을 전주혜 위원님이 발의하긴 했지만 그 기회를 얻어서 이 건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경희 논의를 정리하면요 1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3번으로 넘어가서,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기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로 한 것이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예.

○조은희 위원 ‘단’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자꾸 죄송한데요 재발방지대책을 낼 때, 저희 시행령 2조의3에 이미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법에 재발방지대책만 내셔도, 사건 처리 경과가 항상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효과밖에 없어서 저희는 기관장 사건의 경우에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그 조항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유정주 위원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것 안에 가해자·피해자를 바로 분리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앞서 선행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건 통보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보냅니다. 바로 참고자료를 보내는데, 지금 가능한 방법은 피해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사건통보서 안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는지 체크리스트 항목을 넣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할 때 먼저 그것을 보고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또 권인숙 위원장님께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을 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다음에 추가로 논의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유정주 위원 노파심이 들어서요. 이 안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것은 아주 당연히 바로 분리시켜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3항을 심의했는데 전주혜 위원님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셔서 개정안 내용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통보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지금 내신 법안 중에서 1개월을 3개월로 바꾼다 그런 내용이지요?

○전주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사건 인지부터 방지 대책 수립까지 통상 85일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정경희 충분하지요, 3개월이면.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1개월로 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다 보니까 줄줄이 다 과태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 현실을……

○조은희 위원 통상 85일이라는 게 만만디니까 그렇지.

○양의원영 위원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로 빼시면 안 돼요? 처리 결과는 바로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것을 3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런데 이것은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거라 기관장……

○양의원영 위원 권력형 성범죄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제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처리도 누장을 부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박원순 시장 얘기만 하셨는데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안 논의를 하는 김에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건을 즉시적으로 통보하고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저희가 바로 사건통보서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지금 사건 처리 조치라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조치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그런 행정기관의 프로세스나 처리 기한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다 1개월로 당기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행정부처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니까……

○조은희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즉시 통보해야 된다는에서 즉시의 기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을 즉시라고 합니까?

○소위원장 정경희 ‘지체 없이’라고 돼 있지요.

○조은희 위원 통상적으로 지체 없이 할 때 한 시간입니까, 한 달입니까, 3일입니까, 5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막연하거든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지체 없이는 통상 합리적인 범위하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가 여가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기관장이 지체 없이 여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기는 지체 없이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지체 없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1시간 만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체 없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이 며칠인지를 묻는 거예요. 과태료를 물게 돼 있잖아요.

○**전주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소위원장 정경희** 논의를 정리합니다.

사실 현행법이나……

○**조은희 위원** 답만 듣고 할게요. 제가 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저희 통상의 경우로 얘기해서 이게 딱 1일이다, 3일이다 이렇게 까지 기준을 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절차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기간이었나 아니었나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1시간, 하루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확인하고 내부 절차를 마치고 보고 절차……

○**조은희 위원** 내부 절차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에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한 시간……

○**조은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까다롭게 그래서 죄송한데요.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확인한 후 며칠 이내에는 해야 된다 그게 지체 없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아…… 안 그러면 행정기관 내에서 타임레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저희 하위 규정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사건

발생 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것은 양쪽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3·4항을 논의해야 되는데, 4항도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 3항에서 결론이 안났는데 어떻게…… 전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것 여성가족부 수정의견대로 받아들이실 건지……

○**전주혜 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유정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의견이 너무 많은데 다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여성가족부 수정의견 안을 받아들이신답시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다'라는 게 여성가족부의 수정의견이거든요.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전주혜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으시면 4항에 대한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130쪽의 4항을 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도록 개정안 5조의4……

○**전주혜 위원** 끝난 겁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래요?

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되니까 수용하신다고 이미 하셨군요. 그러면 4항도 논의할 필요가 없군요.

○**전주혜 위원**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여성가족부 수정의견을 대표발의하신 전주혜 위원님께서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심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수정의견 그대로 하는 것으로 다 합의된 것으로……

○**조은희 위원** 전제가 달려 있지요.

○**유정주 위원** 수정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여성가족부령으로 사건 보고할 때 피해자 보호대책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체 없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전제로 받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 전제로. 문구는 여기 정리된 대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경희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한규	양이원영	용혜인	유정주
장경태	전주혜	정경희	조은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입법심의관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